

전라남도 행정심판위원회 재 결

① 사 건	전남행심 제2022-044호 정보 비공개결정 취소청구		
청 구 인	② 이 름		
	③ 주 소		
대 리 인	④ 이 름		
	⑤ 주 소		
⑥ 피청구인		⑦ 참 가 인	
⑧ 주 문	피청구인은 2021. 11. 25. 청구인에게 한 정보 비공개결정은 이를 취소한다.		
⑨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⑩ 이 유	별지에 적은 내용과 같음		
⑪ 근거법조	「행정심판법」 제46조		

위 사건에 관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합니다.

2022. 5. 30.

전라남도 행정심판위원회



이 유

【제2022-044호, 정보 비공개결정 취소청구】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1. 11. 12. 피청구인에게 ‘2021년도 ○○ ○○○○축제 (이하 ‘이 사건 축제’ 라 한다) 총 소요예산 집행에 대한 구체적인 세부 내역, 총인원, 금액’ (이하 ‘이 사건 정보’ 라 한다)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

피청구인은 2021. 11. 25. 이 사건 정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 이라 한다) 제11조 제3항, 제21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제3자 비공개 의견에 따라 이 사건 정보 비공개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을 하였다.

청구인은 2022. 2. 17.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 하였다.

2. 청구취지

피청구인은 2021. 11. 25. 청구인에게 한 정보 비공개 결정은 이를 취소 한다.

3. 당사자 주장요지

가. 청 구 인

1) 피청구인은 2021년 ○○ ○○○○축제에 대한 청구인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비공개 결정을 하였다. 청구인 외 ○○ 주민 대다수가 이 사건 축제 지원 금액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이에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피청구인

1) 이 사건 축제는 ○○ 행정복지센터가 주최하고 ‘○○○○○ ○○ ○’ 행사추진위원회(이하 ‘이 사건 위원회’라 한다)가 주관하여 2021. 11. 6. ○○시 ○○의 거리 일원에서 지역민과 상인회 등이 참여한 지역 축제이다.

2) 이 사건 위원회가 제출한 정보공개 의견서에는 “이 사건 정보를 청구인에게 공개하는 것이 ○○의 발전과 화합에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 분명함으로 정보를 비공개하여 줄 것을 요청함” 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마땅히 기각되어야 한다.

4. 관계 법령

-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1조, 제21조
- 2)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5. 판 단

가.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각종 증거자료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과 전라남도행정심판위원회가 직권으로 조사한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청구인은 2021. 11. 12.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축제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를 하였다.

[정보공개청구서]

1. 청구인 : ○○○
2. 청구내용 : 2021년도 ○○ ○○축제 총 소요예산 집행에 대한 구체적인 세부내역 소요사항 대한 구체적 총인원·금액 및 세부내역

2) 피청구인은 2021. 11. 17. 정보공개법 제11조 제3항 및 제21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위원회로부터 정보 비공개 의견서를 접수하였다.

[제3자 의견서]

1. 제3자 : ○○ ○○○○ ○○○ 행사추진위원회
2. 정보내용 : 2021 ○○ ○○○○ ○○○ 축제 총 소요예산, 집행 세부내역, 인원
3. 의 견 : 올해 ○○○○ ○○○ 축제는 행사추진위원회에서 수차례 회의와 토론을 거쳐서 개최를 결정하고 세부 행사계획을 세워서 진행하고 마무리했음.
그러함에도 세부 집행내역과 인원 등을 정보공개 요청한 것은 ○○의 발전과 화합에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 분명하므로 본 정보공개 건에 대하여 비공개 하여 줄 것을 요청함.

3) 피청구인은 2021. 11. 25. 이 사건 정보에 대한 비공개 결정을 통보하였다.

[비공개 결정 통지서]

1. 청구내용 : 2021년 ○○ ○○○○ 축제 총 소요예산, 집행 세부내역, 구체적 인원, 금액
2. 결정내용 : 비공개
3. 비공개사유 : 정보공개법 제11조 제3항, 제21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의거 제3자 의견서(○○ 행사추진위원회) 비공개 의견에 따라 비공개 결정

4) 청구인은 2022. 2. 17.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1) 관계법령

【정보공개법】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①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로 한정한다)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2.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3.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4.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矯正),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5.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다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에는 제13조제5항에 따라 통지를 할 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의 단계 및 종료 예정일을 함께 안내하여야 하며,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제10조에 따른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6.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사항은 제외한다.

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는 정보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

7.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危害)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나.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8.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② 공공기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가 기간의 경과 등으로 인하여 비공개성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그 정보를 공개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은 제1항 각 호의 범위에서 해당 공공기관의 업무 성격을 고려하여 비공개 대상 정보의 범위에 관한 세부 기준(이하 “비공개 세부 기준”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④ 공공기관(국회·법원·헌법재판소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외한다)은 제3항에 따라 수립된 비공개 세부 기준이 제1항 각 호의 비공개 요건에 부합하는지 3년마다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비공개 세부 기준을 개선하여 그 점검 및 개선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① 공공기관은 제10조에 따라 정보공개 청구서를 받으면 그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起算)하여 10일의 범위에서 공개 여부 결정기

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기관은 연장된 사실과 연장 사유를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은 공개 청구된 공개 대상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공공기관은 다른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의 공개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소관 기관으로 이송하여야 하며, 이송한 후에는 지체 없이 소관 기관 및 이송 사유 등을 분명히 밝혀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⑤ 공공기관은 정보공개 청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원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민원으로 처리할 수 있다.

1. 공개 청구된 정보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지 아니하는 정보인 경우

2. 공개 청구의 내용이 진정·질의 등으로 이 법에 따른 정보공개 청구로 보기 어려운 경우

제21조(제3자의 비공개 요청 등) ① 제11조제3항에 따라 공개 청구된 사실을 통지받은 제3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해당 공공기관에 대하여 자신과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비공개 요청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이 공개 결정을 할 때에는 공개 결정 이유와 공개 실시일을 분명히 밝혀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하며, 제3자는 해당 공공기관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하거나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의신청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은 제2항에 따른 공개 결정일과 공개 실시일 사이에 최소한 30일의 간격을 두어야 한다.

【정보공개법 시행령】

제8조(제3자의 의견청취) ① 공공기관이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제3자의 의견을 들을 때에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3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말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담당 공무원 등이 제1항 단서에 따라 말로 의견을 듣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기록하고 본인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판 단

가) 대법원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하여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정보공개법의 입법 취지 및 위와 같은 규정 형식에 비추어 보면, 여기에서 말하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라 함은 당해 공공기관이 작성하여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뿐만 아니라 경위를 불문하고 당해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모든 정보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제3자와 관련이 있는

정보라고 하더라도 당해 공공기관이 이를 보유·관리하고 있는 이상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단서 각호의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정보공개 대상이 되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가 제3자와 관련이 있는 경우 그 정보공개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공공기관이 제3자와의 관계에서 거쳐야 할 절차를 규정한 것에 불과할 뿐, 제3자의 비공개 요청이 있다는 사유만으로 정보공개법상 정보의 비공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두8680 판결 등 참조)” 라고 판시하고 있다.

나) 청구인의 행정심판청구서, 피청구인의 답변서, 제3자의 비공개 의견서 및 위 판례의 법리 등을 종합하여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각호 중 어느 조항에 해당하는 정보인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아니한 채 단순히 ‘정보공개법 제11조 제3항, 제21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제 3자의 의견 청취 결과 비공개 의견을 제출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정보 비공개 결정을 하였는바,

이는 이 사건 정보에 대한 공개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비공개하여야 할 필요성이나 요건에 관한 실질적인 판단과 근거법령을 사유로 든 것이 아니라, 앞서 본 바와 같이 정보 보유·관리 주체와 제3자와의 관계에서 거쳐야 할 절차에 불과한 제3자의 비공개 요청이 있었다는 점만을 사유로 들어 이 사건 정보에 대해 비공개 결정한 것이므로 위법하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